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2.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안 제명)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변경
-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에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예방 (안 제7조)
- 모성보호에서 모·부성의 권리보장으로 확대(안 제12조)
-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시설 및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 안 제14조의4)

- 지원 대상을 단체에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안 제15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에서 심의·조정으로 변경(안 제18조)
- 양성평등기금의 내용 변경(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 1이상 참여토록 하는 사항 등
- 타 조례에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13조, 안 제16조)
 - 아동보육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춰 양성평등의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 현 조례 중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남녀평 등"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함.
 - 기존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방향, 재원조달, 운용 방안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권리를 여성에서 모·부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장함.

-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신설함.
-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라 양성 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토록 함.
- 위원회의 기능을 구청장의 자문에서 양성평등정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으로 변경하고
-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 참여토록 하고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비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시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지출금액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로 조정함.
- 타 조례에 중복되는 아동보육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항 폐지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81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용어 변경, 조항 신설 등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남녀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
- 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수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 (안 제7조 제1항)
- 다.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제14조의4)
- 라.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권리를 모성에서 모·부성권으로 확대 (안 제12조)
- 마.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조정으로 변경(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6.10.06 ~ 2016.10.26.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성평등 정책"을 "영등포구의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2조 중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으로, "법"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수립)"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 및 제8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을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제4조의2 제1항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을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성평등 정보제공 등)"을 "(양성평등 정보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 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로한다.

제9조의 제목 "(남녀 평등의식 제고)"를 "(양성평등의식 제고)"로 하고, 같은 조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성차별 개선 등)"을 "(성차별 금지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사업"을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모성보호)"를 "(모、부성의 권리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를 "임신、출산 、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시설"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시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 및 도시기반시설
 -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회 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 5. 여성친화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 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 2. 여성친화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단체의 지원)"을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있는 법인 및 단체(법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등기금"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을 "각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를 "선출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인지 정책 전문가

제19조제2항제2호 중 "성평등 문제에 관하여"를 "양성평등 분야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출산정책담당 주사가"를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을 "양성평등을 촉진하기"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양성평등 실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28조제3호 중 "여성관련"을 "양성평등 관련"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

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가"를 "양성평등정책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주요항목"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를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할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 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무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본법. -양성평등 -----밖에 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 영등포구의 양성 라 한다)의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평등정책-----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 (이하 "법"이라 한다) ---- 양성평 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제3조(구민의 책무) ----------- 양성평등 -----및 그 밖에 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 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4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수립) ①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및 -----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

제8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기본계

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로 하여 연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u>1. 양성평등</u> 경
	방향
2. 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u>2. 양성평등</u> 경
가. 남녀평등의 촉진	<u>방법</u>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u>3. 주요정책</u>	<u>3. 양성평등</u>
가. 남녀평등의 촉진	재원의 조달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	
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한 부모 가정 등	
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	4. 그 밖에 ?
원의 조달방법	<u>한 사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길
제4조의2(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제4조의2(성별
<u>성평등</u>	

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
<u>한 사업</u> ② (현행과 같음)
② (연%과 같음) 제4조의2(성별영향분석평가) ①
<u>양성평등</u>

제4조의4(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 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 결산 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 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 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홈페이지 등 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 가할 수 있다. 제5조(성평등 정보제공 등) ① 구청 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 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여성 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

제4조의4 <u>(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u>
을 위한 지원) ①
양성평등정
<u> </u>
<u>~</u>
② (현행과 같음)
③ <u>양성평등</u>
·.
제5조(양성평등 정보제공 등) ①
양성평등정책
<u> </u>
② <u>양성평등</u>
제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1. ~ 3. (현행과 같음)
4 양성평등

한 범 구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u>위촉직</u> 위원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 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각종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u>남녀평등</u> 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남녀 평등의식 제고) 구청장은 남녀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성차별 개선 등) ① ~ ③

 제7조(구정참여 확대) ①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
<u> 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u> 다
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u>.</u>
②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여성과
<u>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u>(양성평등의식 제고)</u>
<u>양성평등</u>
제10조(성차별 금지 등) ① ~ ③

(생 략)

- 제11조(복지증진 등)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 , 가출 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 방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사업

2. 3. (생략)

②、③ (생략)

- 제12조(모성보호) 구청장은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 제13조(아동보육) 구청장은 어린이 집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4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 제14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전을 위한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현행과 같음)
제11조(복지증진 등) ①
·
1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u>(모、부성의 권리 보장)</u>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
√부성권을 보장하고
<u>〈삭 제〉</u>

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 설-----제14조의2(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신 설〉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친 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 및 도시기반 시설

-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 제14조의3(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 <u>향 및 전략</u>
-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u>〈신설〉</u>

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 5. 여성친화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 안
-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 런된 사항
- 제14조의4(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 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 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 할을 수행한다.
 -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 2. 여성친화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 안
 -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 업 추진 및 홍보
 -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 제15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의 지원) ----- 양성평등

있는 법인 및 단체(법 제3조제2호 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기금의 범 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 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 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구청 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 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제1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성평등 정책 및 지역사회 참여사 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
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
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u></u>
<u>양성평등기금</u>
<u>〈삭 제〉</u>

제17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u>양성평등</u>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 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성평등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제19조(구성) 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 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 2. 성평등 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 험을 갖춘 사람
 - 3. 4. (생략)
-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생략)
-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 | ② ------

-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 산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 요사항 ----- 각 1명을 포함한 20명 ---_____ ----- 선출하며 1.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인지 정 책 전문가 2. 양성평등 분야에 -----

 - 3. \ 4. (현행과 같음)

 - ----- 총괄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 1명----.

기는 <u>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가</u> 된다. ③ (생 략)

제4장 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생략)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u>여성의 권익 · 복지증진</u>을 위한 사업
- 2. 제15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가 수행하는 사업
- 3. <u>여성관련</u>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생 략)
-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u>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u>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u>양성평등기금</u>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u>양성평등을 촉진하기</u>
<u>양성평등기금</u>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용도)
1. <u>양성평등 실현</u>
2.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
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u>양성평등 관련</u>
4.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
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생략)
-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u>지역경</u> 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u>장</u>
-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u>성평등</u> 정 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생 략)
-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을</u> 두되, 간사는 <u>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가</u>되다.
- 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략)
 - 5.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
 -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하려면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u>.</u>
1. (현행과 같음)
2 <u>복지정책</u>
<u>과장</u>
3 <u>양성평등</u>
④ (현행과 같음)
(5)
1명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u>정책사업</u>
<u>〈삭 제〉</u>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하다.

-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심의회</u>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생 략)
- 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생략)
 - ②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u> 로 한다.
 - ③ 「지방재정법」중 <u>경리관</u>과 징수 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 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 고) ①、② (생 략)

〈신 설〉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위원회</u>
<u>총괄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u>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u>
·.
③ <u>재무관</u>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
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
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
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